

# 프랑스 농업협동조합은행의 농업부문 정책 및 동향\*

김 두 년  
(중원대학교 교수)

## 1. 서론

우리나라의 농협은 역사적으로 농촌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농촌지역의 농업금융을 전문기관으로서 농업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농업정책자금의 조달과 분배에 있어서 농협을 중심으로 농업부문의 정책금융을 수행해 왔다. 근년에 들어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에도 시중유동성이 풍부해지고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으로 농협중앙회에서 농협은행이 분리된 상황에서도 농업부문 정책금융을 계속해서 농협에 전담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프랑스에서도 초창기 농업정책금융에 있어서는 농업금융전문기관으로 탄생한 크레디 아그리콜(Crédit Agricole)을 이용하여 왔다. 그러나 EU공동농업정책을 비롯한 프랑스 농정의 변화와 농업금융기관으로 출발한 크레디 아그리콜이 금융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금융기관으로 변화하는 과정과 맞물리면서 농업정책금융을 일반은행에까지 개방하였다.

프랑스의 경험에서처럼 우리나라의 농업부문 정책금융에 있어서도 농업협동조합에 의 의존도가 점차 약화되고 일반금융기관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고에서

\* (dnkim@yu.ac.kr).

는 우리보다 먼저 농업정책금융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던 프랑스의 농업정책금융 제도와 변화를 살펴보고, 농업협동조합은행인 프랑스의 크레디 아그리콜의 농업부문 정책금융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농업부문 정책금융의 변화에 미칠 영향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2. 프랑스 농업협동조합은행의 연왕

### 2.1. 프랑스 농업협동조합은행(Crédit Agricole S.A)그룹의 발전과정

프랑스의 크레디 아그리콜 그룹은 농업신용조합으로 출발한 프랑스 농업정책금융의 실질적인 파트너로서 유럽 제1의 금융그룹의 하나이다.

크레디 아그리콜은 1894년 11월 법률에 의거하여 지역농업은행(Caisse Locale=Local Bank)<sup>1)</sup> 이 설립된 것이 효시이다. 1899년 3월에는 지역농업은행의 광역연합<sup>2)</sup>으로서 광역농업은행이 설립되고, 지역농업은행과 광역농업은행의 계통조직 운영지원을 위한 국고자금 대출이 시작되었다. 1920년 8월에는 지역농업은행과 광역농업은행의 육성감독 및 국고자금대출을 실시하는 정부조직으로서 전국농업신용사무국(Office National du Crédit Agricole)이 설치되고, 이 정부조직을 바탕으로 1926년에 전국농업은행이 설치되어 크레디 아그리콜의 전국적인 3단계 조직이 완성되었다.

1945년에는 광역농업은행의 협의체로서 전국농업신용연합회(Fédération Nationale du Crédit Agricole, FNCA)가 발족하였는데, 당시에는 조합원의 자격과 대출대상은 점차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정부차입금을 주된 자원으로 하여 정부의 정책자금을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정부의 정책대출 전담조직으로 활동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크레디 아그리콜은 예금흡수를 통한 자체자금으로 지역농업금융기관으로서의 활약하기 시작하였고, 정부에서도 농촌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채널로서 크레디 아그리콜을 활용하였다. 예금흡수를 위한 광역농업은행의 지점망 확충에 따라서 지역농업은행의 금융 업무는 점차 축소되고 광역농업은행에 대한 대출의 추천과 중개업무로 축소되었다.

1959년에는 인구 2,000명 미만의 농촌에는 비농업인 거주자에게도 지역농업은행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게 되었고, 1960년대 이후에는 비농업인 조합원의 영입이 늘어나

1) 2103년 말 현재 전국에 2483개의 지역농업은행이 있는데, 설립단위는 우리나라의 면단위 회원조합과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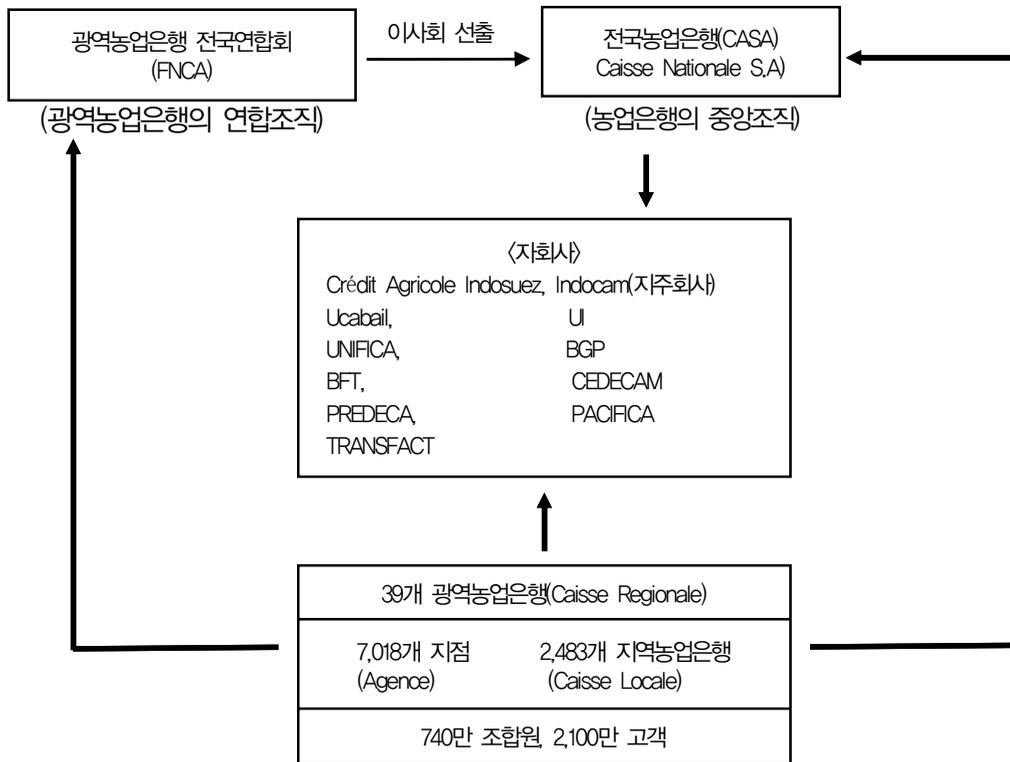
2) 2013년 말 현재 전국에 39개의 광역농업은행이 있는데, 설립단위는 우리나라의 시도단위의 연합회에 해당한다.

면서 점차 농업금융기관에서 지역금융기관으로의 전환(탈 전문화 : Déspécialisation)하게 되었고, 2001년에는 전국농업은행의 주식을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전국농업은행은 크레디 아그리콜 주식회사(Crédit Agricole S.A)로 전환하고 민영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크레디 아그리콜 그룹은 1920년에 전국농업은행이 설립되면서 부터 정부의 농업정책 금융을 독점하여 왔으나 시중자금이 풍부해 지면서 1991년에는 모든 대출제한이 철폐 되고, 크레디 아그리콜이 주식회사로 전환하면서 농업정책금융에 있어서 크레디아그리콜의 독점적 지위는 소멸하게 되었고 농업정책금융은 공개체제로 개방되었다.

## 2.2. 크레디 아그리콜의 계통조직<sup>3)</sup>

그림 1 크레디 아그리콜 조직체계도



자료: 송제빈, 2006, 「농업정책금융의 이해」, 삼부문화, p.210, 및 Crédit Agricole S.A., 2013. Annul Report(Registration Document, 영문판)을 참조하여 2013년 말 현재 자료로 저자 수정.

3) 송제빈, 2006, 「농업정책금융의 이해」, 삼부문화, p.210, 및 Crédit Agricole S.A., 2013. Annul Report(Registration Document, 영문판)을 참조하여 2013년 말 현재 자료로 수정.

크레디 아그리콜의 전체 조직체계는 1개의 전국농업은행(Crédit Agricole SA)과 39개의 광역농업은행(Caisse Regionale de Crédit Agricole)과 7,088개의 지점(아장스, Agence)이 있고, 이 광역은행 아래에 단위농업은행인 2,549개의 지역단위농업은행(Caisse Locale de Crédit Agricole)<sup>4)</sup>이 연합되어 있는 체계이다.

2013년 말 현재 기초단위의 지역농업은행(Caisse Locale, Local bank)은 2,483개이며, 조합원은 약 740만 명이다. 지역농업은행은 초창기에 예금과 대출업무를 담당하였지만 현재는 예금과 대출업무 등 은행 업무는 실시하지 않고, 대출신청에 관한 대출심사와 의견진술을 수행하는 등 금융 상품의 중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조합원에 의해 선출되는 이사가 있고, 이사는 대부분은 지역의 유력자이자 지역금고와 고객을 맺어주는 역할을 한다.

광역단위의 광역농업은행(Caisse Regionale, Regional bank)은 7,018개의 지점(Agence)을 통하여 직접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중추적인 금융조직이다. 1988년에는 국가 소유의 모든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민간은행의 지위를 획득하였다. 광역농업은행을 대변하는 기구로 광역농업은행 중앙연합회(Fédération Nationale du Crédit Agricole, FNCA)가 있고 이 연합회를 통하여 중앙농업은행(CASA)에 관리이사를 추천함으로써 중앙농업은행을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주)전국농업은행(Crédit Agricole SA, CASA)은 크레디 아그리콜 농업은행의 3단계 조직의 전국 중앙조직이다. 전국농업은행은 예금수취기능이 없고 자회사를 통한 대출기능과 광역농업은행의 자금관리 및 금융리스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기능으로서 39개 광역농업은행의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통합 금융상품의 개발과 함께 자회사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3. 프랑스의 농업정책

#### 3.1. 프랑스의 농업정책

프랑스 농업정책의 많은 부분은 EU의 공동농업정책 (Common Agriculture Policy, CAP)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프랑스의 농업정책은 기본적으로 농업·농촌 관련정책들이 ‘농업법전(Code Rural, 이하 ‘농업기본법’ 이라 한다)’의 틀 속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

4) Caisse Locale과 Caisse Régionale는 지구금고, 지방금고, 지역금고 등으로 번역하지만, 여기에서는 영문연차보고서에 따라서 Caisse Locale을 지역농업은행(Local Bank)으로 Caisse Régionale을 광역농업은행(Régionale Bank)으로 표기하였다.

---

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본법 농정으로 이해된다. 농업기본법은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국가의 농정목표를 명확히 하고 목표실현을 위한 관련제도와 재원(기금) 그리고 정책수행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프랑스의 농업기본법은 농정목표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대별로의 변화하여 왔는데, 1960/1962년 농업기본법은 도농간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농업경영체의 근대화에 목표를 두고 탈농을 통한 농지유동화를 추구하였다. 1980년의 농업기본법은 농산물무역 확대에 따른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농업 유지를 위한 영농정책에 중점을 두었다.

프랑스의 농업정책은 대내적으로는 가격지지를 근간으로 하는 구조정책을 보완한 기존의 농업정책이 프랑스를 농업대국으로 부상시키고 도농 간 발전격차를 해소시키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사회변화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사회적 역기능을 초래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농업에 대한 정부개입이 사회적으로 수용되도록 농업기본법의 개정을 요구하게 되었다.

2003년에는 EU 농업공동정책의 개혁요구를 받아들여서 프랑스 농업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고, 2006년에는 단일직접지불제의 시행에 발맞추어서 '2006년 농업기본법'이 개정되었다. 이 법의 특징은, 첫째, 농업경영을 '농업기업'으로 규정하고 농업기업의 지위에 관한 각종 제도를 정비하였다. 둘째, 정책적 유도조치로서 세제상의 우대 조치가 많이 사용되었다.

## 3.2. 2006년 개정 농업기본법의 농업정책의 변화

2006년 개정된 프랑스 농업기본법의 농업부문 정책금융제도의 내용은 대체로 1) 농업경영 자산제도의 도입, 2) 농업경영의 양도 및 경영참가에 대한 과세경감조치, 3) 3) 농지임대차의 양도가능성 확보, 4) 농업경영의 년차별 분할상환 승계제도, 5) 농업보험제도의 도입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를 순차로 설명한다.

### 3.2.1. 농업경영 자산제도의 도입

농업경영자산제도는 농업기업에 속하는 농업기계, 가축, 재고, 임대차 계약(양도 가능), 상호, 명칭, 고객관계, 특허 등의 지적 재산권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농가단위의 일괄 급여 지급권, 우유 생산조정 한도 등의 생산에 관한 권리도 경제적으로 평가한다. 농업경영자산은 담보로 할 수도 있고 자금조달의 원활화에 기여하고 있다.

### 3.2.2. 농업경영의 양도 및 경영참가에 대한 과세경감 조치

가족관계에 있는 동업자의 은퇴 등에 따라서 그 지분을 가족 관계가 아닌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양수인이 공동경영자로서 유한책임의 농업경영에 참가하는 경우에도 농업소득 과세의 경감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2.3. 농지임대차의 양도가능성 확보

2006년 이전에는 농지임대차에 대하여 지료(地料)의 통제, 임대차 계약의 갱신거부 제한, 가족 이외의 임대차 양도 금지 등에 따라 임차인에게는 장기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보장하고 임차형 농업의 규모 확대를 지원해 왔다. 2006년 농업기본법에서는 농업사업 양도를 쉽게 하도록 농업경영자산 제도를 마련하고, 가장 중요한 경영자산인 농지임대차에 관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으면 가족 이외의 자에게도 양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 3.2.4. 농업경영의 연차별 분할상환 승계제도

전통적인 신규취농지원제도는 취농한 후에 점차 규모를 확대하는 것으로 상정하여 왔고 전문농업경영의 평균 규모는 70ha 이상을 상정하여 왔다. 농업경영의 연차별 분할상환 승계제도는 70ha 이상 규모의 경영을 한꺼번에 인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 고안되었다. 계약금은 50%만 지급하고, 잔금은 8~12년 분할로 지불하면서, 경영은 일괄 양도하도록 하였다. 양도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의 경감 조치를 강구하여 양수인의 부담을 경감하였다.

### 3.2.5. 농업보험제도의 도입

종래의 전통적인 자연재해 위험관리는 농업인과 국가가 절반씩 부담하는 추가보상금 지불이 결합되어 있었다. 종래의 전통적인 자연재해 위험관리는 농업인의 보험가입이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률이 낮고 재해보상금도 적고 보상금의 수령에 소요되는 노력과 시간 등이 많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2005년부터는 농업보험제도를 확충하고 이에 대해 국가의 보조를 증액하여 가입률을 높이고, 이를 중심으로 재해위험관리의 중심에 두도록 하였다.

---

## 4. 프랑스 농업정책금융 지원체계

### 4.1. 프랑스 농업정책금융의 종류

농업정책자금의 종류를 분류하는 기준은 1) 농업정책 자금의 정책분야, 2) 농업정책 자금의 내용 및 지원 대상, 3) 농업정책의 수행주체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다.

#### 4.1.1. 농업정책 자금의 정책분야에 따른 분류

농업정책자금을 지원분야별로 구분하면 직접지원, 사회구조적 지원, 정착 및 개업지원, 투자지원 그리고 특별금융지원 등 5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다. 영농후계자 정착지원, 농가주택개량지원 등 농업인에 대한 국가보조사업은 농업입지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일수록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거나 유리한 이자율로 지원하는 차등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등지원으로 산간지역 등 조건불리지역에 위치한 농가의 경우 평균소득의 약 30%를 직접지불제를 통해 지급하고 있다.

#### 4.1.2. 농업정책 자금의 내용 및 지원 대상에 따른 분류

농업정책자금의 지원 성격에 따른 분류는 보조금지원(subvention)과 특별저리융자(crets speciaux bonnifies)로 구분할 수 있다.

농업지원정책에는 보조금지원 정책과 저리융자지원 정책 가운데 하나만을 지원하는 것이 있는 반면 두 개 모두 함께 지원하는 지원정책도 있다. 보조금과 저리융자를 함께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업은 청년 영농정착자 지원 사업이다. 보조금지원의 경우의 대표적인 것이 영농정착보조금지원(DJA)인데 지원에서 저리융자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저리융자 지원정책에 해당하는 것은 특별금융지원사업으로 이차보전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은 품목과 기능별로 5개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저리융자의 경우에는 고정이자율(3.5%)로 지원하며 최근 들어 시중 이자율 하락으로 정책적 실효성이 감소하고 있다.

#### 4.1.3. 농업정책의 수행주체에 따른 분류

농업정책을 수행하는 주체와 예산지원의 범주에 따른 분류이다. EU차원의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e Policy, CAP)에 의한 공동농업예산, 국내농업정책에 의한 프랑스정부예산,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레지옹(Region)과 도(Department)의 농업지원정책에

의한 지방정부예산으로 대별할 수 있다.<sup>5)</sup> 이 가운데 유럽공동농업정책 관련시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4.2. 농업정책금융의 지원체계

### 4.2.1. 전국단위 농업정책자금의 배분과정

EU 공동농업정책자금과 프랑스농업정책자금 등의 지역 간 배분은 농업기본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도지역농업발전계획에 따라 이루어진다.

농림부분 정책자금(보조지원, 특별용자)의 지역별 배분은 다시 도 지역농업발전계획의 내용과 전년도 예산집행실적과 실천정도에 따라서 '지역'이 아닌 '도'단위로 배정한다. 도지역농업발전계획은 지역 내 농업관련기관의 대표가 참여하고 있는 도 농업지도위원회에서 수립한다.

### 4.2.2. 도단위 지역농업 발전계획 수립

지역농업발전계획 수립과정을 보면 농림부 산하 도 농업국이 주관하여 먼저 분야별로 연구그룹(은행, 공제조합, 농민단체,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을 결성, 도 농업회의소가 제공한 지역농업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약 1주일간 토론을 거쳐 분야별 계획안을 마련한다. 이 계획안을 토대로 도는 중앙의 재정지원 가능성을 검토하여 최종 계획안을 수립하고 마지막으로 도 농업지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농업지도위원회에 의회 지도자가 참여하고 사전에 중앙정부로부터 자금지원 가능성을 검토하므로 지역농업발전계획은 재원조달까지 포함된 계획이다. 1차 연도에는 지역농업발전계획 수립 시의 예산협의과정에서 지원규모를 결정하고 차기 연도부터는 계약한 내용의 달성정도를 평가하여 부진하면 해당사업의 지원규모를 축소하고 재원이 부족하면 확대한다.

### 4.2.3. 도 농업지도위원회의 기능

프랑스의 각종 농업정책자금을 분배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는 각 도에 설치된 도 농업지도위원회이다. 도 농업지도위원회는 농업기본법(제 313-1호) 및 농업지도위원회 구성에 관한 농림부령(1995년)에 따라 각 도에 설치·운영되는 기구로서 매5년마다 지역농업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정책자금 신청농가에

5) 2013년 12월 현재 프랑스 지방자치단체는 26개의 광역자치단체인 레지옹(region)' 과 중역자치단체인 101개의 데파르트망(departement)', 기초단체인 36,767개의 코뮌(commune)으로 이루어져 있다(주프랑스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프랑스 개관 참조).

대한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 농가선정에 관여한다.

도 농업지도위원회의 구성은 중앙정부가 임명한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며, 경제 및 구조분과, 협동조합분과, 역경농민 지원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 4.3. 농업정책금융 신청 및 지원 절차

#### 4.3.1. 농업정책금융지원조건

정부지원이 농업보조금만 지원하는 경우와 보조금과 농업정책금융지원을 함께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조금과 정책금융지원을 연계하지는 않는다.

정책금융 지원 금리는 일정한 고정금리로 설정하는 경우와 이차보조율만 결정하고 시장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결정되는 방식이 있다. 일반적으로 농가에 대한 이자율을 3.5%(조건불리지역은 2.0%)로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최근 시장이자율이 계속적으로 하락하여 정책금융금리와 차이가 불과 1.5~2% 수준이어서 정책금융지원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

#### 4.3.2. 농가의 농업정책자금 신청

농가가 정책금융 지원을 신청할 경우 우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승인서를 받아 농업지도위원회 혹은 농림부 산하 도 농업국에 지원신청을 한다. 사업계획서에는 특정한 형식은 없지만, 도 농업회의소의 지도사 등으로부터 기술 컨설팅을 받고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경영회계보고서 작성을 지도받는다. 저리자금신청은 월1회로 한정하고 있다.

#### 4.3.3. 지원 대상 농가의 선정

대상농가 선정은 도 농업지도위원회의 '경제 및 구조분과'에서 선정한다. 도 농업국에서 농가로부터 신청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도 농업지도위원회로 보내면 '경제 및 구조분과'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농가에 대한 지원 규모는 도 농업지도위원회가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농가가 신청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지원규모를 결정하고 있다. 도 농업지도위원회는 농가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만이 아니라 지원내용을 결정하여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 4.3.4. 금융기관의 대출실행 및 이차보전

농업정책금융 특별저리융자의 경우에는 고정이자율(3.5%)로 지원하고 일반대출금리와 이차차액을 보전하고 있다.

농업정책금융 저리융자는 농업인의 융자신청에 대하여 도 농업지도위원회의 승인이 있으면 농업정책금융을 취급하는 5개 금융기관이 채권을 확보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사후에 중앙정부로부터 이차보전을 받는다.

정부기관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정부재정이 소요되는 이차보조의 승인 여부만 심사하는 것이며, 도 농업지도위원회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도 금융기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금융기관은 대출금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조건에 대해서는 신용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대출금에 대한 회수책임이 금융기관에 있는 경우에는 전적으로 금융기관이 대출여부를 결정한다. 농업인은 정책자금 신청 시 금융기관의 대출승인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대출금은 사업계획서에 의해 연차별로 지원하는데 영농정착자금의 경우에는 5년간 계획서에 의해 지원하면서 매년 실적을 평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대출금 지급 방법은 농가가 구입하고 난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며 사업계획서 내용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매년 은행에 회계장부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 4.3.5. 청년영농후계자 영농정착자금

청년영농후계자 영농정착자금은 농업인 육성을 위한 주요한 정책수단으로서 유럽연합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이 50%, 프랑스 정부가 5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21~35세의 경영주로 농업전문대학 교육을 이수하고 6개월 이상 현장실습을 한 자이다. 2003년의 청년영농후계자 정착자금 대출규모는 전체 대출의 40%를 점하고 있다.<sup>6)</sup>

영농정착자금을 지원 받으면 10년간 의무적으로 영농하여야 하고 동시에 경영회계장부를 기록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 의무조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저리 융자뿐만 아니라 보조금도 회수하게 된다.

#### 4.3.6. 농업경영체의 회계기록

회계장부 기록은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농가는 반드시 농업경영의 회계를 기록하여야 한다. EU에서는 농업경영회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회계기록을 조건으

6) 송제빈, 2006. 「농업정책자금의 이해」, 삼부문화.

---

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회계장부는 본인이 직접 기록하거나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기록하고 있다.

## 5. 프랑스 농업협동조합은행의 농업부문 지원

### 5.1. 프랑스의 농업정책금융 취급금융기관

프랑스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농업정책금융은 농업은행인 *크레디 아그리콜*을 통하여 정부자금을 전대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정부가 이차를 보전하는 이차보전이 추가되었다. 1989년까지는 정부의 지원 하에 농업금융기관인 *크레디 아그리콜*이 농업정책자금을 독점적으로 취급하여 왔으나 1990년 이후에는 정부가 주관하는 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선정된 일반 상업은행에 대해서도 농업정책금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정부의 경쟁 입찰에 의하여 농업정책대출 취급은행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재무부 및 농림부와 향후 3년간의 농업정책대출 취급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농업정책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는 프랑스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기준금리에 추가 금리를 가산한 금리인데, 농업정책금융 취급을 위한 입찰에서는 3년간의 대출계획과 취급 시 적용할 추가 금리에 관한 사항을 입찰한다.

농업정책대출 취급기관은 관련대출에 대하여 기준금리에 추가 금리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지만 농업인은 정부에서 책정한 기준금리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므로, 프랑스 정부는 금융기관의 적용금리에 의한 이자와 농업인이 부담하는 기준금리에 의한 이자와의 차액을 이차보전으로 금융기관에 보전한다.

현재 농업정책대출 취급 금융기관으로서는 농업금융기관인 *Crédit Agricole*을 비롯하여 *Crédit Mutuel*, *Banque Populaire*, *BNP*, *CIC* 등 5개 은행이 농업정책금융을 취급하고 있다.<sup>7)</sup> 이처럼 농업정책금융 취급금융기관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은 정책금융지원방식이 이차보전방식으로 바뀌면서 정부가 재원조달에는 관여할 필요가 없고,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이차보전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정부와 연계하지 않고 중앙정부와 각 은행 본점간의 단순한 계약으로도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

7) 이 밖에도 *Crédit Lyonnais*은행과 *Societe General*은행이 참여하였으나 *Crédit Lyonnais* *Crédit*은행은 *Crédit Agricole*에 합병되었고, *Societe General*은행은 1998년 이후 취급이 중단되었다.

## 5.2. 프랑스 농업협동조합은행(Crédit Agricole C.A)의 농업정책금융

### 5.2.1. 그레디 아그리폴의 농업정책금융 점유비

그레디 아그리폴은 농업정책금융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전체 농업정책대출시장의 약 70% 후반 대를 차지하고 있다. 그레디 아그리폴이 전체 농업정책대출취급 금융기관 중에서 차지하는 연도별 점유비를 보면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농업정책자금을 일반은행에 개방하였던 첫해인 1990년에는 95.0%의 점유율을 보였으나 그 이후 매년 조금씩 감소하여 2000년에는 84.6%, 2003년에는 79.6%, 2010년<sup>8)</sup>에는 76.2%를 나타내고 있다.

### 5.2.2. 농업금융에 있어서 그레디 아그리폴의 강점

그레디 아그리폴은 2000년 기준 전국의 보조금부 대출의 85%, 전체 농업대출의 80%를 취급하였는데, 프랑스에서 농업정책금융시장을 개방하였음에도 그레디 아그리폴이 농업금융에서 절대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프랑스의 그레디 아그리폴이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서 나름대로의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첫째, 그레디 아그리폴 최대의 강점은 농업금융의 독점적 지위에서 오는 역사성이다. 농업금융에 있어서 그레디 아그리폴의 강점은 농업신용조합으로서 장기간에 걸쳐서 농업정책 금융을 거의 독점적으로 취급하여 왔다는 역사성에 있다.

둘째, 그레디 아그리폴의 또 다른 강점은 농업금융업무의 전문성이다. 다른 은행에 비해 대농업인 서비스가 우수하고 농업전문가가 사업성 평가에 참여하고 있어 농업경영정보에 대한 분석능력이 우수하고 전국적인 점포망을 형성하고 있어 농업금융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레디 아그리폴에는 품목별로 농업전문가를 두고 사업성을 심사하고 있다. 광역농업은행에서는 농업투자의 사업성 분석을 위하여 분야별 농업전문가를 고용하고 있지만 광역농업은행 내에 농업전문가가 담당하기 어려운 분야가 있으면 필요에 따라 농업회의소 컨설턴트의 자문을 받아 사업성을 평가한다. 특히 영농정착자금 지원과 같은 자금지원에서 이용되고 있는 영농경력, 교육정도, 현장실습, 자부담 등을 고려한 기술적 담보평가에서 농업전문가를 활용한다.

셋째, 농업인이 쉽게 친근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고 농촌지역의 의사가 반영되기 쉬운 조직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광역농업은행의 지점망에 지역농업은행의 이사가 농촌의 자금수요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농촌지역의 밀도

8) 김미복, 2011. “독일, 프랑스의 농업부문 정책금융체계 조사,” 해외출장보고서(2011.11.13-11.2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높은 서비스 네트워크를 하고 있다. 소액대출의 경우 농업인이 이사로 되어 대출을 결정하고 있어 농업인이 쉽게 친근감을 가질 수 있다. 광역농업은행의 이사 중에는 지역농업은행의 이사가 다수 선임되고, 전국농업은행의 이사 중에도 광역농업은행의 이사장 또는 행장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시은행에 비해서 농촌지역의 의사를 경영에 반영하기 쉬운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농업금융에 있어서 강점으로 작용한다.

### 5.2.3. 그레디 아그리폴의 농업정책금융 취급체계

전국농업은행은 예금수취기능이 없고 자회사를 통한 대출기능과 광역농업은행의 자금관리 및 금융리스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농업은행도 대출기능은 없고 예금수취기능만 가지고 있다. 일정규모 이상의 대출금에 대해서는 광역농업은행이 담당하고 그 이하의 대출금에 대해서는 광역농업은행의 지점(Agence)에서 취급한다. 대출결정은 대출담당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인 이사로 구성된 대출심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데 대출심사위원은 거의 농업인으로 구성되어 보수적으로 대출심사를 하지 않아 농업인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고 있다. 농업정책자금 지원에서 도 농업지도위원회가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출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때에는 단지 정부로부터 이차보상만 받지 못한다.

그레디 아그리폴은 전체 대출금 중에서 12%를 농업부문에 대출하고 있는데, 프랑스 전체의 GNP 중 농업의 비중이 3% 수준임을 감안하면 여전히 농업부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농업대출에 있어서 최대고객은 농협이다.<sup>9)</sup> 농협의 경우에는 차입금의 대부분(약 95%)을 그레디 아그리폴에 의존하고 있다.

### 5.2.4. 그레디 아그리폴의 농업금융 서비스의 종류

프랑스 그레디 아그리폴의 대표적인 농업정책금융은 정부에서 이차를 보조받는 농업정책금융대출을 비롯하여, 대출기간이 2~20년으로 이자는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대출하는 중장기 대출이 있고, 임대기간 3~7년에 임대비용은 경영주기에 따라 조정 가능한 농기계 등 임대자금, 운전자금을 단기 대출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어음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경영자금대출,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기계의 종류와 경영주기에 따라 신속하게 기계를 조달하고 대출 또는 임대를 실시하는 농기계종합대출서비스, 농업인의 인적, 물적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 보험인 농업인 종합손해보험, 신규취농, 사업확

---

9) 우리나라와 달리 신용사업을 취급하지 않는 경제 사업을 취급하는 농협을 말한다.

장, 경영이양 계획에 대해 전문가가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여 경영·기술·자금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취농·경영 이양에 대한 경영·기술 서비스를 들 수 있다.

### 5.2.5. 그레디 아그리폴의 농업금융 대출심사

프랑스에 있어서 농업금융의 담보 및 보증제도는 전적으로 금융기관의 판단에 달려 있다. 금융기관이 일반금융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대부분 담보대출이 기본이지만 신용대출을 병행하는데 대출여부는 상환능력 판단이 결정적이다. 담보만 있다고 대출(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 평가도 대출에 중요한 요소이다. 담보가 없는 경우에는 신용대출을 하는데 필요한 경우 보증인을 요구하는데 보증인의 자격은 상환능력의 여부만 고려하고 있다. 보증인의 자격요건은 상환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보증인이 될 수 있고 특별히 인척관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부모가 영농후계 자녀에게 보증하는 경우가 많다.

농업정책금융 대출은 원칙적으로 신용대출로서 농업정책금융 대출의 부실을 막기 위하여 대출심사에서 사업계획서 제출 등 제반규정을 엄격히 적용한다. 농업정책대출 심사에서는 농업인의 경영능력, 농업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생산품의 시장성 등 기본요건을 검토하여 대출한다. 농업인은 시장금리보다 낮은 특혜금리를 적용받으므로 농업정책자금 대출심사 시 신용조사 등 제출서류와 절차를 다소 복잡하게 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타당성과 수익성에 대해 재삼 숙고하게 함으로서 농업정책자금 대출의 부실운동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연체발생 시에도 정부의 이차보전이 중단되어 연체 발생 시에 농업인에게 높은 금리를 부담시키는 것도 부실채권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수단이 된다.

### 5.2.6. 그레디 아그리폴의 농업금융 위업외피수단

농업정책대출에 연체가 발생하면 정부는 이차보전을 중단한다. 원금은 대출은행이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대출하였기 때문에 대출금에 대한 회수책임도 당연히 금융기관이 부담한다. 다시 말해서 대출 이후의 문제는 은행과 채무자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금융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은 농업인의 경영부실로 인한 신용위험을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그레디 아그리폴 전국농업은행의 대출위험 회피수단을 보면, 광역농업은행에서 중장기 예금으로 유치한 자금은 전액 CASA에 예치하고, 중장기 대출 시에도 CASA로부

터 자금을 선지급 받아 대출함으로써 거래처가 상환불능이 되더라도 신용리스크는 모두 CASA가 부담하는 시스템이다.<sup>10)</sup>

전체 금융시장정보는 CASA가 잘 알고 개별 차주에 대한 정보는 광역농업은행이 잘 알기 때문에 그룹 전체로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시스템이다. 크레디 아그리폴 금융그룹의 금융기관에 대한 보증으로 크레디 아그리폴 공동보증기금이 있다.<sup>11)</sup>

### 5.2.7. 크레디 아그리폴 전국은행의 공동보증기금

프랑스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농업부분 신용보증제도는 없다. 일찍부터 크레디 아그리폴 중앙은행인 전국농업은행(CNCA)에서 광역농업은행에 대한 신용보증기금(Fonds de garantie)을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던 관계로 정부차원의 농업신용보증시스템은 갖추지 않고, 농업금융기관 스스로가 신용리스크 회피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 6. 결론 및 시사점

지금까지 프랑스의 농업협동조합 은행인 크레디 아그리폴의 현황과 프랑스의 농업정책금융 시스템의 변화를 살펴본 후, 프랑스 크레디 아그리폴이 농업부분 정책금융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프랑스에서는 농업협동조합은행의 민영화와 함께 1980년대 말까지 유지되었던 농업정책금융에 대한 농업협동조합은행의 독점적 지위가 없어지고 경쟁체제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협동조합은행은 여전히 농업정책금융의 선두그룹을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 농업협동조합은행의 경험은 우리나라 농협의 농업정책금융에 취급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초창기 농업정책금융 전담기관으로 설립되었던 크레디 아그리폴의 농업정책금융을 다른 은행에 개방하고 완전 민영화하였다. 농업정책금융의 흐름을 보면 국가기관에서 직접 자금지원을 하다가, 전담금융기관을 설립하여 정책금융을 전담하다가, 일반금융기관으로 확대하였다. 프랑스가 농업정책금융 취급금융기관을 확대하게 된 것은 시중의 자금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농업정책자금 조달방식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일반금융기관으로 확대하였다. 자금의 지원방식도 종전의 크레디

10) 김두년, 프랑스 크레디 아그리폴, 농협조사부, CEO Focus 제74호(2000.11.14), p.32.

11) 1935년에 크레디 아그리폴 중앙은행인 전국농업은행(CNCA)에서 광역농업은행에 대한 신용보증기금(Fonds de garantie)을 창설하여 운영하여 왔으며,<sup>1)</sup> 그 후 1988년 2월 1일자로 그 동안 광역농업은행의 대출위험을 보증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던 공동보증기금은 전국농업은행(CNCA)에 흡수합병 되었다(오현석, 프랑스 크레디 아그리폴 선진금융제도 연구, 지역아카데미(2002.1), p.27.

아그리콜을 통한 직접지원 방식에서 보조금과 이차보전방식으로 바뀌었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에 프랑스에서 경험했던 바와 같이 농업정책금융 전달기관인 농협중앙회의 독점체제를 폐지하고 일반 시중은행까지 취급기관을 확대하는 단계에 있다. 우리나라에도 시중의 자금유동성이 풍부하고 농업정책대출도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농업정책금융 취급기관을 일반시중은행까지 확대하였지만 농협을 제외한 시중금융기관들이 농업정책금융의 취급에 소극적이다. 우리나라는 프랑스에 비하여 농업의 경영규모가 소규모이고 소요자금도 소액이기 때문에 일반 금융기관들이 농업 부문 정책자금 취급에 별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 농업협동조합은행이 농업정책금융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농업정책금융취급의 역사성과, 농업정책금융 시스템과 전문성, 농업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농협의 경우에도 프랑스의 농업협동조합은행과 비슷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도 농업정책금융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업부문 대출심사 기능의 강화, 농업경영컨설팅, 농업인의 전문교육, 농업회계 시스템의 개발 등 농업금융에 특화된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농업정책금융의 담보 및 보증제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프랑스보다 정책자금을 대출받기가 어렵다고는 할 수 없다. 아직도 농업정책자금의 규모가 작고 소규모 정책자금은 대부분 농어업인신용보증기금으로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어업인 신용보증에서 제외되는 농업정책자금을 담보 없이 대출받기는 어렵다. 언제 까지 농업정책금융을 농어업인신용보증기금에 의존할 것인가?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출제도의 개선요구가 제기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농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용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신용능력을 평가하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맞춤형 융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 참고문헌

- 강종만. 2004. 「농업정책자금 조달 및 운용방안 개선」. 한국금융연구원.
- 김두년. 2000. “프랑스 크레디 아그리콜”. 농협중앙회조사부, CEO Focus 제74호 농협중앙회.
- \_\_\_\_\_. 2003. 「프랑스 협동조합법의 최근동향」. 농협대학 농협경제연구소 특정연구사업보고서. 농협경제연구소.
- \_\_\_\_\_. 2007. “프랑스 협동조합법의 법적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협동조합연구 제24집 제2호. 한국협동조합학회.
- \_\_\_\_\_. 2010. “프랑스 농업협동조합은행의 농업정책금융에 관한 연구”. 한국협동조합연구 제28집 제1호. 한국협동조합학회.
- 김미복. 2011. “독일, 프랑스의 농업부문 정책금융체계 조사”. 해외출장보고서(2011.11.13.-11.2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부. 1999. 「선진국 농업정책금융지원제도」. 정책연수결과보고서. 농림부.
- 농협중앙회. 2002. 「프랑스 크레디 아그리콜 선진금융제도 연구」. 지역아카데미 수탁과제.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 2000. 「유럽의 협동조합은행」. 농협중앙회.
- 농협조사연구소. 2005. 「유럽 협동조합은행의 사업전략」. 농협조사연구소.
- 송제빈, 2006. 「농업정책자금의 이해」. 삼부문화.
- 오영권. 2008. 「프랑스 신용보증제도」. 코딩리서치 가을호. 한국신용보증기금.
- 이재욱. 2003. “신용보증제도의 발전방안”.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 최재학. 2004. “크레디 아그리콜(CA)의 최근변화”. 농협경제연구소. CEO Focus 제128호. 농협경제연구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외국의 농업투융자제도 조사연구」. 연구보고 C2000-38-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農林中金總合研究所. 2001. 「フランスの協同組合と組合金融の法的構造」. 總研レポート, 1 2 調-9. 農林中金總合研究所.
- 農林漁業金融公庫調査室. 2006. 「フランスの農業・農業金融」. 農林漁業金融公庫調査室.
- Crédit Agricole S.A.. 2013. Annul Report(Registration Document). Crédit Agricole S.A.

## 참고사이트

- Crédit Agricole S.A. ([www.credit-agricole.com](http://www.credit-agricole.com))
- COPA ([www.copacgva.org/legislation.htm](http://www.copacgva.org/legislation.htm))
- ADASEA ([www.adasea.net](http://www.adasea.net))